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1가합51756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2023나203285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1가합517563 판결

전문

원고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황건수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곽태훈

변론 종결2023. 4. 21.

판결 선고2023. 6. 23.

주문

-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2019. 3. 11.자 500,000,000원, 220,777,000원의 각 금전 지급행위를 7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D 주식회사 사이에 2019. 3. 11. 체결된 500,000,000원, 220,777,000원¹⁾의 각 증여계약을 7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과 같다.²⁾ 또는 D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 사이에 2019. 3. 11. 체결된 500,000,000원, 220,777,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7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의 D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9. 7. 6.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① 일반자금대출로 420억 원을, ② 종합통장대출로 100억 원을 각 만기일 2011. 7. 6.(최종적으로 2016. 6. 6.로 연장됨), 이자율 연 11%,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①, ②번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2) E,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 이하 'F'라 한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D의 A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에 기한 채무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①	일반자금 대출	2009.7.6.	2016.6.6.	420억 원	연11%(연25%)	546억 원	631억 원
②	종합통장 대출	100억 원	연11%(연25%)	130억 원			
합계	520억 원		676억 원	631억 원			

3) D은 이 사건 각 대출의 만기일까지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4) A은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가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5) 원고는 D, F, C,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01999호로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8. 13.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D, F, C,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789,851,088원 및 그 중 29,453,657,855원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1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E, F는 각 67,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C는 63,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9. 2. 확정되었다.

D은 위 소송에서 'D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부지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대출금을 사업부지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반하여 대출금을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매계약금으로 집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D에게 이러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D이 가지는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가 가지는 이 사건 각 대출채권과 상계하여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은 상계적상일로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가 D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원고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 주장과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D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6)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인 2021. 3. 9. 기준 원리금 합계 84,986,658,248원이 남아 있다.

나. D의 송금 및 그 경과

1) D은 2019. 3. 11. 12:22:21경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로부터 D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억 원을 이체받았다.

2) D은 같은 날 12:24:51경 위 I은행계좌에서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의 명의의 K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9억 3,000만 원, L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억 7,000만 원 합계 70억 원을 이체하였다.

3) J는 같은 날 15:15:58경 J 명의의 위 K은행 계좌에서 2,106,151,833원을 출금하였다.

4) C는 같은 날 15:17:29경 J 명의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억 원을 송금하였다.

5) C는 같은 날 15:19:10경 J 명의의 위 L은행계좌로 376,600,060원을 송금하였다.

6) C는 같은 날 15:21:26경 M 명의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83,774,731원을 송금하였다.

7) C는 같은 날 15:23:20경 N 명의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5,000,042원을 송금하였다.

8) C는 같은 날 15:25:31경 피고 명의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억 원을 송금하였다.

9) C는 같은 날 15:26:17경 피고 명의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20,777,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위 1)항 내지 9)항의 금전거래를 '이 사건 금전거래'라 하고, 위 8)항, 9)항의 돈을 합하여 '이 사건 돈'이라 한다).

10) J가 위 3)항에서 출금한 2,106,151,833원과 C가 위 4) 내지 9)항에서 피고 등에게 송금한 돈의 합계 2,106,151,833원(= 500,000,000원 + 376,600,060원 + 483,774,731원 + 25,000,042원 + 500,000,000원 + 220,777,000원)은 같은 금액이다.

다. 피고의 처분 등

1) 피고는 2019. 3. 27. 이 사건 돈을 인출하여 같은 날 피고 명의의 L은행

수퍼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입금한 후 2019. 4. 22. 10억 원을 출금하여 피고 명의의

L은행 펀드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입금하였고, 2019. 10. 31. 위 펀드계좌를 해지한 후 같은 날 위 수퍼저축예금계좌로 1,015,934,132원을 입금하였으며, 2020. 1. 9. 위 계좌에서 11억 원을 수표로 출금하였다.

2) 한편 E은 시행 및 건설 사업을 위하여 D, F, C, J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이고, 피고와 E은 부부 사이이며, C의 주식은 피고와 E이 각 50%를 소유하고 있다.

3)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할 당시 C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18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돈을 J, C를 거쳐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D, J, C는 전부 F의 관계사 내지 계열사인 점, F 관계회사의 자금 입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0이 피고 등에게 돈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J가 굳이 C를 거쳐 자신 명의의 K은행계좌에서 L은행계좌로 금전을 이전시킬 이유가 없는 점, J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과 C가 피고 등에게 각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전거래는 F 회장인 E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지급된 720,777,000원은 D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여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원고는 위 증여계약을 7억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할 것을 구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 7억 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D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부지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대출금을 사업부지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반하여 대출금을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매계약금으로 집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D에게 이러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D이 가지는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가 가지는 이 사건 각 대출채권과 상계하여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은 상계적상일로 소급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돈이 피고에게 지급된 2019. 3.

11. 당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C의 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C의 납세의무에 대해 2차 납부의무를 부담하는데, C가 법인세를 체납하여 역삼세무서장은 2차 납부의무자인 피고에게 2016. 9. 5. 686,121,920원 및 595,400,26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역삼세무서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2016아12245)에 따라 피고에게 74,451,694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를 피고에 대한 위 납세채권과 상계하였고, 피고는 2017. 12. 26. 역삼세무서에 434,907,220원을 지급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에 대하여 합계 509,358,914원(= 74,451,694원 + 434,907,220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8. 1. 18. C의 요청에 따라 J에게 268,739,600원을 지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C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268,739,6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는 2019. 3. 11. C로부터 이 사건 돈을 위 구상금채권과 대여금채권 합계 778,098,514원에 대한 일부 변제로 받은 것이므로 채무자인 D과 피고 사이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예비적 청구

1)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돈을 변제받은 것임을 전제로 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주장처럼 피고가 이 사건 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C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면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송금한 행위는 C와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는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나, 위 예비적 청구는 C의 피고에 대한 변제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취소하고자 하는 사해행위 자체가 달라 소송물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와 같은 예비적 청구취지 추가는 부적법하다.

2) D이 C에게 이 사건 돈을 증여한 것임을 전제로 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C에게 앞서와 같이 돈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C는 D의 이 사건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이면서 F의 관계사이므로 악의가 추정되며, 피고는 F의 회장인 E의 배우자이므로 전득자로서의 악의가 인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는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나, 위 예비적 청구는 D와 C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취소하고자 하는 사해행위 자체가 달라 소송물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와 같은 예비적 청구취지 추가는 부적법하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주장 가) 피고는, D이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채권에 대하여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0748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가단5201999 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에 기하여 D으로부터 '78,789,851,088원 및 그 중 29,453,657,855원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1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위 확정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배척된 상계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만 할 뿐 피보전채권의 부존재에 관하여 별도의 주장·입증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의 존재 사실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결국 사해행위 여부가 문제되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돈이 지급된 2019. 3. 11.을 기준으로 원고는 D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당사자적격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의 소의 채무자인 D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수익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채권자취소의 소에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는데, 원고로부터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당사자적격 유무는 원고의 주장자체로 결정되고 피고가 실제 수익자인지 여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금전거래 과정은 D이 피고에게 증여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수익자임을 전제로 D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수익자로서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금전거래가 같은 날 이루어진 사실, ② J의 K은행 계좌에서 2,106,151,833원이 출금된 후 C 명의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돈이 지급되기까지 약 11분이 소요된 사실, ③ J에서 출금된 위 2,106,151,833원은 C가 피고 등에게 각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과 동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금전거래에 참여한 D, J, C는 모두 F의 관계사 내지 계열사인 사실, F의 관계회사의 자금 입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00이 이 사건 금전거래를 수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금전거래가 D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돈을 지급받은 것일 뿐 D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금전거래가 같은 날 단기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원고의 주장은 D이 J와 C의 계좌를 빌려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증여하였다는 것인데, D이 J와 C의 계좌를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같이 H, D, J, C가 F의 관계사 내지 계열사로서 F의 운영자인 E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H에서 70억 원이 D으로 이체되면서 이 사건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H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보거나, E이 피고에게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라) 반면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돈을 지급받은 것은 피고의 C에 대한 구상금 및 대여금채권의 변제라고 주장하면서, 구상금채권의 증거로 C가 법인세 일부를 체납하여 역삼세무서장이 2016. 9. 5. C의 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자인 피고에게 686,121,920원 및 595,400,260원의 납부통지서를 발한 사실에 관한 각 납부통지서(을 제5호증), 피고가 역삼세무서에 2017. 12. 5. 74,451,690원, 2017. 12. 26. 434,907,220원을 각 납부한 사실에 관한 납부내역증명서(을 제7호증), 확인증(을 제8호증)을, 대여금채권의 증거로 피고가 2018. 1. 18. C에 268,739,600원을 대여한 사실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제9호증)를 제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가 C의 채권자로서 C로부터 이 사건 돈을 변제받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돈이 D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에 따라 수수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돈을 변제받은 것임을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주위적 청구와 위 예비적 청구는 증여계약의 증여자와 수증자, 증여행위의 내용이 모두 달라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채권자의 각 청구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고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주위적 청구와 위 예비적 청구는 피고가 이 사건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D 또는 C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D와 C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한다는 것이므로, 위 청구들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기초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해행위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 돈이 피고에게 지급된 2019. 3. 11.을 기준으로 C에 대하여 수백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대출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가) 관련법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가 이 사건 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하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라 한다)은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는 C의 50% 지분을 소유한 주주인 점, 나머지 50% 지분을 소유한 주주인 E은 피고의 배우자이며, D, C 등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점 등에 비추어 C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이자율이 연 12%이고, 구상금채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C에게 대여금 등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바, 피고가 C의 주식 50%를 보유한 주주라는 점 외에 변제이익 더 크지 않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 등 채무를 굳이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③ 이에 반하여 C는 원고에 대하여 거액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현저히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연대보증채무는 원금 및 이자의 각 상환일도 이미 상당기간 도과하였으며 지연이율은 연 25%에 이른다.

④ 이 사건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한 O은 피고의 남편인 E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데, O이 J에서 인출한 2,106,151,833원 중 합계 720,777,000원을 C 명의로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볼 때, C의 피고에 대한 변제와 관련하여 C, 피고, E 사이에 상호간에 공통된 인식의 교환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가 이와 같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대여금 등 채무를 변제한 이상 C의 사해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원고가 구하는 7억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D이 C에게 이 사건 돈을 증여한 것임을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김상우

판사김현정

판사김민지

1) 원고는 2022. 1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취지에 모두 '220,770,00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 및 갑 제9호증의 2(입금전표)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220,770,000원은 220,777,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취지 모두 220,777,000원으로 정정한다(오기 정정으로 청구취지 변경을 초래하지 않음).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22. 1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도

증여계약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원용하는 2022. 6.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원인에서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와 C 주식회사 간의 각 송금행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합니다'라는 제목 하에, 주문

제2항 기재 금전지급행위가 피고와 D 주식회사 사이의 증여계약이 아니라면 피고와 C 주식회사의

통모에 의한 변제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취지를 주문 제2항 기재 각 '금전지급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